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·육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

2022년 7월 21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7월 13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7월 13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2년 7월 21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행정문화국장 송오섭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」이 2020. 12. 20. 개정, 2021. 1. 1.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,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용어 및 관리기준을 보완·개선하여 보조금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‘정액보조금’을‘운영에 필요한 보조금’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,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등 관리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 (안 제8조부터 제12조)
- 「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인용법규

「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(안 제16조)
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함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,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 용어 및 관리기준을 보완·개선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·육성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하고자 함.
-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‘정액보조금’을 ‘운영에 필요한 보조금’으로 변경하고,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등 관리와 관련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,
- 안 제16조는 「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로 인용법규를 변경하고, 그 이외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함.
- 본 조례개정으로 인해, 향후 지역과 연계된 각종 문화사업의 다각화 및 지역문화를 건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업수행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회계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·감독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